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5.)에서 의결된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1년 10월 5일

영광군 조례 제2739호

붙임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한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에 관한 사항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산정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군수가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신청을 받아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영광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영광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영광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영광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5.)에서 의결된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1년 10월 5일

영광군 조례 제2740호

붙임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관리비용 지원

제2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사원주택, 관사,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3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 지원계획(사업별 대상 지역 우선순위,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은 제외한다.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2.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3.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4.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5. 무인택배 보관함의 설치 및 보수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개선
7. 단지 내 근로자(경비원, 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8.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보강
9.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보수
10. 노후 승강기 교체(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공동시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 및 제2항제4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 등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영광군 소속 기술직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자문활동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종합 지원계획(사업별 대상 지역 우선순위,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포함)을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표의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배점표에 따라 결정 또는 단지별 현장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④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영광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준) 군수는 총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별 지원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에너지 저감시설 사업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
2.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택관리사, 건축 및 도시계획 관계 전문가
4. 종합민원실장
5. 안전관리과장
6. 도시환경과장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대안 등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연수, 유지보수의 시급성 등)에 관한 사항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4. 기존 보조금 지원 경과기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위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 한다.

제12조(사업시행) ① 사업시행은 관리주체 등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공동주택 단지,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1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

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실장 및 과장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9조(분쟁조정 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② 제1항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조합으로 한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거부 또는 중지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분쟁조정 등) ① 제1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결안이 작성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조정 효력) ①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제24조(감사의 대상) ①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5조(감사의 요청) ①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
3. 그 밖에 감사 요청과 관련한 자료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감사요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할 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4. 감사 기간과 감사 범위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반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한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담당 실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예정인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청렴서약 및 성실이행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전문감사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29조(감사 실시) ① 군수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다. 다만,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의 교부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배점표

분 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비 고
형평성 (30점)	최근2년 지원건수 (5점)	0건	5	
		1건	3	
		2건	0	
	최근2년 지원규모 (25점)	5,000천원 미만	25	
		5,000천원 이상 ~ 10,000천원 미만	20	
		10,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	15	
20,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10		
	30,000천원 이상	0		
사업성 (30점)	공동주택 규모(세대수) (15점)	20세대 미만	15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12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9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6	
		200세대 이상	3	
	보조금 신청금액 (15점)	3,000천원 미만	15	
		3,000천원 이상 ~ 5,000천원 미만	10	
		5,000천원 이상 ~ 8,000천원 미만	5	
10,000천원 이상		0		
안전성 (20점)	시설물 노후도(준공연도) (안전상태, 노후도 등) (20점)	25년 이상	20	
		20년 이상 ~ 25년 미만	15	
		15년 이상 ~ 20년 미만	10	
		10년 이상 ~ 15년 미만	5	
		10년 미만	0	
공동체 (15점)	분쟁발생 및 행정처분 횟수 (전년도 기준) (15점)	분쟁발생 또는 행정처분 사항 없음	15	
		민원야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1회 이하 또는 과태료 3,000천원 이하	5	
		민원야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1회이상 또는 과태료 3,000천원 이상	0	
인센티브 (5점)	지자체 시책사업 적극 참여 (5점) (행정사항이행 여부, 자료제출 등)		5	
총계(100점)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공동주택 단 지 명		대표자(전화번호)	(남, 여)
			관리자(전화번호)	(남, 여)
	대지위치			
	동 수		사용승인일 (준공일)	
	세 대 수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전체 연면적(m ²)		전용면적(m ²)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기 간	~	
공사구분	개 요		소요경비의 내역(단위: 천 원)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계	보조액	자체부담액
계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위원 서명 날인)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공동주택 단지명		관리사무소 전화 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p>「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분쟁조정 신청자(주체)가 추천한 대표위원 명단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출 석 요 청 서			
조정건명			
신 청 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대상자	성 명	주 소	
출석시간	년 월 일 (:)		
출석장소			
<p>「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을 요청하오니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p>※유의사항</p> <p>1.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반려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반려사유				
<p>「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반려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조정건명					
신청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의결내용					
<p>「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안을 의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의결내용			
<p>「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별지 제8호서식]

감사 요청인 연명부

단 지 명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청렴서약 및 성실이행 동의서

본인은 영광군 공동주택의 감사에 참여함에 있어 부패 없는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 높아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청렴한 영광”을 실현 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전문감사관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청렴서약 사항>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감사안건과 관련된 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청탁을 받지 않겠습니다.
3. 공동주택의 감사 회의 내용 및 기타 직무상 취득한 감사사항에 대하여 전문감사관으로 재임 중은 물론 해촉 이후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전문감사관 본인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감사안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감사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성실이행 사항>

1. 공동주택의 감사 및 자문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장기간 해외출장이나 개인적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신고하겠습니다.
4. 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동의 없이 해촉 가능함에 동의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 . .

서 약 자

(인)

영 광 군 수 귀 하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결과보고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년 월 일

감사반 직 성명 (인)

영광군수 귀하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5.)에서
의결된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1년 10월 5일

영광군 조례 제2741호

붙임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 단위사업계획서”를 “따른 단위사업계획서”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다음의”를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④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융자한도액	융자이자율	상환조건
주민복지지원사업	1인당 2,000만원 이내	연 1%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기업유치지원사업	1기업당 5,000만원 이내	연 1%	

제8조제1항 본문 중 “영 제19조”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융자사업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5.)에서
의결된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1년 10월 5일

영광군 조례 제2742호

붙임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섬 지역에는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서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관리지역 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중 농업·어업·축산업 및 임업용 창고,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면지역 건축물

3. 영광군 건축 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3조제2항 본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개방주차장”으로 한다.

제16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개방주차장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13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3년 이상 무료 제공하여야 한다.

2.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17조(개방주차장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

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주차장에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개방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3. 개방주차장에 입간판 및 표지판

4. 주차 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군수가 개방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27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지원의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군수는 개방주차장주차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시설을 결정한다.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5. 관리주체 부담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 정산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보조금의 반환)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개방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지한다.
5.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6.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7. 그 밖에 관리자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개방주차장 표지의 설치) ①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 설치비용은 군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25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이에 관한 신고가 된 경우 및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이에 관한 신고를 하기 위해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다만,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은 120㎡당 1대(시설면적/120㎡)로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다만,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시설면적/100㎡)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가구, 호실)당 1.05대 이상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1/110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되, 세대(가구, 호실)당 1.2대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1/85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되, 세대(가구, 호실)당 1.2대 이상

	<p>○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상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p> <p>-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가구, 호실)당 1.05대 이상</p> <p>-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1/110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되, 세대(가구, 호실)당 1.5대 이상</p> <p>- 전용면적 85㎡ 초과 :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1/85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되, 세대(가구, 호실)당 1.5대 이상</p>
5의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9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p>○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p> <p>○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p> <p>○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p> <p>○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p>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다만, 공장은 400㎡ 1대(시설면적/400㎡)로 한다.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소유는 취득한 것으로 봄)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 제5의2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제5의2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제5의2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 제5의2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 제5의2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

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비고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영광군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소				무료개방 면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무료개방 기간		~			
무료개방 시간		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div>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5.)에서
의결된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1년 10월 5일

영광군 조례 제2743호

붙임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이상자”를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통보한 부적격자
2.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급자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월 5만원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5.)에서
의결된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1년 10월 5일

영광군 조례 제2744호

붙임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1부.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 또는 거동 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
3.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기(이하 “보행기”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노인성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한다.

② 보행기의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어르신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4년을 주기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어르신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2.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제6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청기 또는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사후 관리) 군수는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5.)에서
의결된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1년 10월 5일

영광군 조례 제2745호

붙임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1부.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근로자의 아이돌봄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장려금은 현금 또는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과 지류형)으로 지급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아빠 육아휴직 지원 신청서 (제5조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광군 거주기간				
	전화번호			휴대폰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함】			
신청인 <small>(*지원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안함)</small>	성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휴대폰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영광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5.)에서
의결된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1년 10월 5일

영광군 조례 제2746호

붙임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0조 중 “영광군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를 “「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중 “제10조 각호”를 “제11조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체육회상임부회장”을 “군체육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군체육회상임부회장 그리고 체육단체 등 각분야를”을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는 제11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5.)에서
의결된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1년 10월 5일

영광군 조례 제2747호

붙임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수산물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또는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부군수

2. 학교급식 업무 관련 영광군청 과장 3명

3. 학교급식 업무 관련 영광교육지원청 과장 1명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

축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영광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 학부모
3. 영광군 소재 학교 영양(교)사
4. 영광군 어린이집연합회원
5. 영광군 친환경 농업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제3항 중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를 “군수는”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등에 우선 위탁”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으로 한다.

제1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친환경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5.)에서
의결된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1년 10월 5일

영광군 조례 제2748호

붙임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메어”를 “매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이런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을 “이런”으로, “반경 50m 이내로 한다”를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민참여형축사”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선으로부터 별표 2 축종별 영향지역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의 70%(100명)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는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10.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란 제한구역 고시일 이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후 준공검사를 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제한하는“금지지역””을 “제한하는 “금지지역””으로, “제한하는 “상대제한구역””을 “제한하는 “상대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가축”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가축을”로, “계류하는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부화장내에 부

설한 계류장의 가축”을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가축”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육하는 가축”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축”을 “개축하거나 축종 변경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축사의 면적범위 내에서”를 “배출시설의 면적범위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축사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면적범위 내”를 “배출시설의 면적범위”로, “현대화 하려”를 “현대화 하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증축 하는 경우로서 1회에 한하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증축하려는 경우”를 “증축하려는 경우(소·양·사슴·말 사육시설 중 허가신청일 기준 3년간 환경신문고에 환경오염민원접수 건수가 3회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호 또는 나호”를 “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축사부지 경계에서 25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증축면적을 포함한 건축연면적 합계 2,500㎡ 미만의 소·양·사슴·말 사육시설 중 허가신청일 이전 3년간 환경신문고에 환경오염민원접수 건수가 3회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

마. 깨끗한 축산농장과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에 따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되어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시설로 축사부지 경계에서 25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축사를 증축 하는 경우(증축면적을 포함한 건축연면적 합계 2,500㎡ 미만의 소·양·사슴·말 사육시설에 한정한다)

3. 축종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해당 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

가. 돼지, 닭, 오리, 개, 젓소 사육시설을 소, 양, 사슴, 말 사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나. 소 사육시설을 양, 사슴, 말 사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4. 신축이 허용되는 경우

가.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해당 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16호 부칙 제8조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금지지역과 주거밀집지역 안 또는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된 소·양·사슴·말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에서 25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동일 축종의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 허용면적은 기존 허가받은 배출시설 면적의 100분의 200의 범위로 한정하며, 건축연면적 2,50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허가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축산관련학교 또는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영광군 후계농업 경영인(축산분야)으로 선정된 사람이 축

사부지(예정포함) 경계에서 25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건축연면적 2,500㎡ 미만의 소·양·사슴·말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은 최근접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제2조제9항에 따른 주민참여형축사를 설치하는 경우로 별표 2 상대제한구역 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축종별 영향지역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의 80% 이상(500m 이내 세대 전체)과 별표 2 상대제한구역 제1호에 따른 시설 소유(운영)자의 80% 이상(500m 이내 시설소유자 전체) 동의를 받고 별표 3에 따른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축사에 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단,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15.)에서
의결된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광 군 수

2021년 10월 5일

영광군 조례 제2749호

붙임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운동의 동기 부여와 활성화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운동 사업”이란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운동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운동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운동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운동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운동 활성화 커뮤니티 중 영광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걷기운동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운동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다.

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자로서 걷기운동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운동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운동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운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및 운영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운동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해 그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걷기운동 마일리지 부여)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운동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운동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걷기운동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에 따른 걷기운동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영광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운동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운동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8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운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운동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운동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